공 개

의안번호	제 51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2. 25 (제4차)

의결사항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2. 25.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별지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2. 제안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상장을 위한 제도 정비

3. 주요골자

□ 상장종목 및 보통주식 등 정의 수정(안 제2조)

□ 상장예비심사 절차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 국내기업과 동일한 예비심사 기한(45일 이내) 설정

○ 효력불인정 규정 도입,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미도입

□ 자진 상장폐지 신청 불허(안 제22조)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업무 일반 규정(안 제85조의2~제85조의4)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제도 마련(안 제85조의5~제85조의18)

○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전 사전협의 의무화

○ 형식적 심사요건 및 질적 심사요건 근거 마련

○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 제도 도입

○ 상장폐지 요건 정의 및 일부 요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마련 등

4. 참고사항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별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로서”를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및 수익증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단서 중 “기업인수목적회사”를 “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제85조의2제2호에 따른 기업성장투자회사”로 한다.

가. 주식(제85조의2제4호에 따른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은 제외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장신청인”을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장신청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 또는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를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또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외국기업”을 “외국기업, 기업성장투자신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2호”를 “제5조제2호 또는 제85조의3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기업인수목적회사”를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제85조의12제1항에 따른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기업인수목적회사”를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기업성장투자회사”로 한다.

제6장(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제1절 통칙

제85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법 제229조제6호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 “기업성장투자회사”란 투자회사로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기업성장투자신탁”이란 투자신탁으로 설정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이란 기업성장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5.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이란 기업성장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말한다.

제85조의3(상장예비심사신청 후 신고사항)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또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후 상장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나 수익자총회의 결의
2.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나 수익자총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4(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 적용기준) 기업성장투자회사 또는 기업성

장투자신탁에 적용하는 재무제표는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2절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제85조의5(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및 상장 시기 등을 거래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신청과 신규상장신청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에 관한 제25조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

제85조의6(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업성장투자회사가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상장폐지된 경우 기업성장투자회사가 해산할 것을 정관에서 정할 것
4. 상장신청일 현재 기업성장투자회사의 모집가액이 법시행령 제241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5. 기타 투자자보호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기업성장투자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7. 기업성장투자회사의 질적심사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신규상장 질적 심사

요건에 관한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은 준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85조의7(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추가상장) 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종목의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가상장 신청은 해당 신주 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85조의8(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변경상장) 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이 해당 주권의 종목명,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85조의9(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을 상장한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1년 이내의 공시규정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경우
3. 법 제81조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5.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 기간 중에 의무보유 대상 주식을 매각(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 매각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②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적용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의10(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제8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제85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3. 법 제186조에 따른 분기별 영업보고서 또는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상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1개월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기간의 산정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의 제출 마감일 다음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업무정지 등의 발생을 확인한 날

③ 제1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은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55조를 준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의11(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의무보유 등) 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1년

2.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의무보유 위반시 조치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제85조의12(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및 상장 시기 등을 거래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신청과 신규상장신청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에 관한 제25조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주식'은 '수익증권'으로 본다.

제85조의13(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업성장투자신탁이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수익증권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신탁계약 등에 따라 수익증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상장폐지된 경우 기업성장투자신탁을 해지할 것을 신탁계약에서 정할 것
4. 상장신청일 현재 기업성장투자신탁의 모집가액이 법시행령 제241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5. 기타 투자자보호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할 것

6. 기업성장투자신탁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7.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1좌당 원본액이 5,000원 이상일 것

8. 기업성장투자신탁의 질적심사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신규상장 질적 심사요건에 관한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은 준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신탁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85조의14(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추가상장)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종목의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가상장 신청은 해당 증권 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85조의15(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변경상장)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이 해당 수익증권의 종목명,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85조의16(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관리종목 지정)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을 상장한 기업성장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1년 이내의 공시규정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경우

3. 법 제81조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5.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 기간 중에 의무보유 대상 수익증권을 매각(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 매각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②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적용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의17(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제85조의16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

도 말 기준으로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제85조의16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3. 법 제90조에 따른 분기별 영업보고서 또는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상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1개월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기간의 산정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의 제출 마감일 다음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업무정지 등의 발생을 확인한 날

③ 제1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55조를 준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주식'은 '수익증권'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의18(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 의무보유 등)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수익증권(이 경우 수익증권은 제2조제18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1년
2.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의무보유 위반시 조치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정관’은 ‘신탁계약’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상장종목”이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10.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가. 주식 나. ~ 바. (생 략) 11. “보통주식”이란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및 수익증권으로서 ----------. 10. ----------. 가. 주식(제85조의2제4호에 따른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은 제외한다.) 나. ~ 바. (현행과 같음) 11. ---------- 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제85조의2제2호에 따른 기업성장투자회사----------.

12. ~ 48. (생 략)	12. ~ 4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상장예비심사신청 후 신고사항) 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후 상장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상장예비심사신청 후 신고사항)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장신청인----------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장예비심사 등) ① (생 략)	제6조(상장예비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이 발행한 외국주식등,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 또는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또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해당 상장신청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통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 ---------- ---------- ---------- ---------- ---------- ----------.

1.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의 경우: 4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	1. ---------- ---------- ------- 외국기업, 기업성장투자신탁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① ---------- ---------- ---------- ---------- ---------- ---------- ---------- ---------- ---------- ----------.
1.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1. 제5조제2호 또는 제85조의3제2호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 또는 상장신청인의 대표이사가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9	제10조(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 ---------- ---------- ---------- ---------- ----------. -----

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규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제85조의12제1항에 따른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상장폐지 신청)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종목별로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제5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폐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 주식의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없다.	제22조(상장폐지 신청) ① -------- ---------- ---------- ---------- ----------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기업성장투자회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제1절 통칙 제85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법 제229조제6호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 “기업성장투자회사”란 투자회사

	로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기업성장투자신탁”이란 투자신탁으로 설정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이란 기업성장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5.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이란 기업성장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말한다. 제85조의3(상장예비심사신청 후 신고사항)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또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후 상장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나 수익자총회의 결의 2.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나 수익자총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4(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 적용기준) 기업성장투자회사 또는 기업성장투자신탁에 적용하는 재무제표는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2절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제85조의5(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절차 및 상장 시기 등을 거래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신청과 신규상장신청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에 관한 제25조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

제85조의6(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업성장투자회사가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상장폐지된 경우 기업성장투자회사가 해산할 것을 정관에서 정할 것 4. 상장신청일 현재 기업성장투자회사의 모집가액이 법시행령 제241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5. 기타 투자자보호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기업성장투자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7. 기업성장투자회사의 질적심사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신규상장 질적 심사요건에 관한 제29조를 준

	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은 준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85조의7(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추가상장) 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종목의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가상장 신청은 해당 신주 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85조의8(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변경상장) 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이 해당 주권의 종목명,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85조의9(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을 상장한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1년 이내의 공시규정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경우
3. 법 제81조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5.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 기간 중에 의무보유 대상 주식을 매각(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 매각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②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상장법인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적용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의10(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제8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제85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3. 법 제186조에 따른 분기별 영업

	보고서 또는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상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1개월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기간의 산정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의 제출 마감일 다음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업무정지 등의 발생을 확인한 날 ③ 제1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상장법인은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55조를 준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의11(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의무보유 등) ①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1년 2.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의 의무보유 위반시 조치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제85조의12(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및 상장 시기 등을 거래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신청과 신규상장신청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에 관한 제25조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주식'은 '수익증권'으로 본다. 제85조의13(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업성장투자신탁이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수익증권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신탁계약 등에 따라

	수익증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상장폐지된 경우 기업성장투자신탁을 해지할 것을 신탁계약에서 정할 것 4. 상장신청일 현재 기업성장투자신탁의 모집가액이 법시행령 제241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5. 기타 투자자보호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기업성장투자신탁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7.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1좌당 원본액이 5,000원 이상일 것 8. 기업성장투자신탁의 질적심사에 관하여는 보통주식의 신규상장 질적 심사요건에 관한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은 준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신탁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

	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85조의14(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추가상장)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종목의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가상장 신청은 해당 증권 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85조의15(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변경상장)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이 해당 수익증권의 종목명,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85조의16(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관리종목 지정)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을 상장한 기업성장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

	정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1년 이내의 공시규정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경우 3. 법 제81조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5.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 기간 중에 의무보유 대상 수익증권을 매각(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 매각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②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적용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의17(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제85조의16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제85조의16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3. 법 제90조에 따른 분기별 영업보고서 또는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상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1개월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기간의 산정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의 제출 마감일 다음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업무정지 등의 발생을 확인한 날 ③ 제1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55조를 준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주식’은 ‘수익증권’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의18(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규상장 의무보유 등) 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수익증권(이 경우 수익증권은 제2조제18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1년 2.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의 의무보유 위반시 조치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정관’은 ‘신탁계약’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연 락 처	02-2100-2664